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5년 11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12월 29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276-4700, www.ki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	74928
A	74927
C1	74929
C2	96466
C3	96467
C4	96468
C5	96469
C-e	75244
C-F	AX370
C-I	81592
C-W	89078
S	AQ500
S-I	AW30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명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원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	74928
A	74927
C1	74929
C2	96466
C3	96467
C4	96468
C5	96469
C-e	75244
C-F	AX370
C-I	81592
C-W	89078
S	AQ500
S-I	AW30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7년 10월 17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8년 08월 25일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한국 삼성그룹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2호 ⇒ 변경후: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2호)
2009년 05월 02일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2호 ⇒ 변경후 :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
2010년 05월 03일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
2010년 10월 25일	1) 종류 수익증권 변경 (종류C ⇒ 종류C1) 2) 종류 수익증권 신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3)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 (종류C-e)
2010년 05월 31일	종류C-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2014년 03월 20일	종류S 수익증권 신설
2014년 09월 30일	종류S-I 수익증권 신설
2014년 10월 30일	종류C-F 수익증권 신설 및 종류S-I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2015년 11월 02일	2015년 11월 2일 이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m.co.kr)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15.11.30 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억원)	
김효찬	1980	차장	33 개	19,889 억원	- 고려대 경영학과 - 2007.1~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억원)	
-	-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효찬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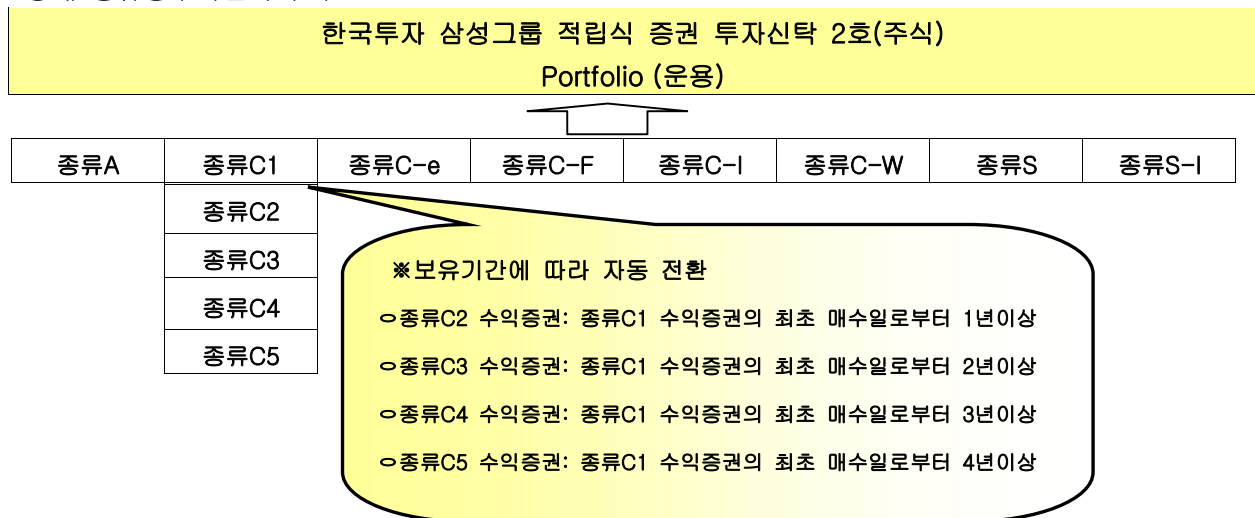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백재열	2007년 10월 17일 ~ 2015년 11월 01일
김효찬	2015년 11월 02일 ~ 현재
-	-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	-
-	-
(주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당해 종류형투자신탁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종류A	종류C-F	종류C-I	종류C-W
최초설정일	2007.10.17	2014.11.14	2008.04.04	2009.10.23
가입자격	제한없음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납입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자	판매회사의 일임 형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보유한 자/

					신탁업자/ 특별계정의 신탁 업자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환매수수료	-	-	-	-
투자신탁보수 (연간, %)	집합투자 업자	0.6900	0.6900	0.6900	0.6900
	판매회사	0.9700	0.0200	1.0000	0.0000
	신탁업자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 관리	0.0200	0.0200	0.0200	0.0200
	총보수	1.7300	0.7800	1.7600	0.7600

구 분		종류 C-e	종류S	종류S-I
최초설정일		2007.10.25	2014.04.22	-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	-	-
	후취 판매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수수료	-	-	-
투자신탁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0.6900	0.6900	0.6900
	판매회사보수	1.0000	0.3500	0.012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0.0200	0.0200	0.0200
	총보수	1.7600	1.1100	0.7720

종류별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최초설정일		2007.10.17	2010.10.25	2010.10.25	2010.10.25	2011.10.19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 수일로부터 1 년 이상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 수일로부터 2 년 이상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 수일로부터 3 년 이상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	-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
	환매수수료	-	-	-	-	-
투자 신탁 보수 (연 간, %)	집합투자업자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판매회사	1.5000	1.3750	1.2500	1.1250	1.0000
	신탁업자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총보수	2.2600	2.1350	2.0100	1.8850	1.7600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성장가능성 및 업종별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60%이상 (단, 삼성그룹주: 50% 이상)	-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인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 삼성그룹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중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본문, 제3호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u>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및 채권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 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장외 파생상품	금리스왑 거래	이자율	헤지 및 헤지외목적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 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 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 의 100%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함)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u>),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u>	

	<u>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u>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u>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자산배분계획 : 적립식펀드의 성격상 기간 분산투자효과가 펀드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 구사보다는 주식편입비율을 85% ~ 9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업종별로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제일기획 등 각 업종별로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주식(삼성그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삼성그룹 계열사가 변경되는 경우 투자종목이 추가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삼성그룹주의 개별종목에 대한 주식편입비율은 유가증권시장내의 시가총액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개별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대비 과도하게 상승하여 투자신탁내 편입비중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10%이내가 되도록 리밸런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ive Profit Cut Rebalancing)

※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 비교지수 지정 사유

-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KOSPI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주식편입비율(신탁계약서상 최고 주식편입비율의 90%수준)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 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 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집합투자재산을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특정그룹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그룹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에 크게 의존하므로 일반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성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제한된 종목 수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삼성그룹에 집중투자 하지 않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주식이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금리스왑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왑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스왑 포지션이 swap pay position일 경우: 금리 하락시, swap receive position일 경우: 금리 상승시)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 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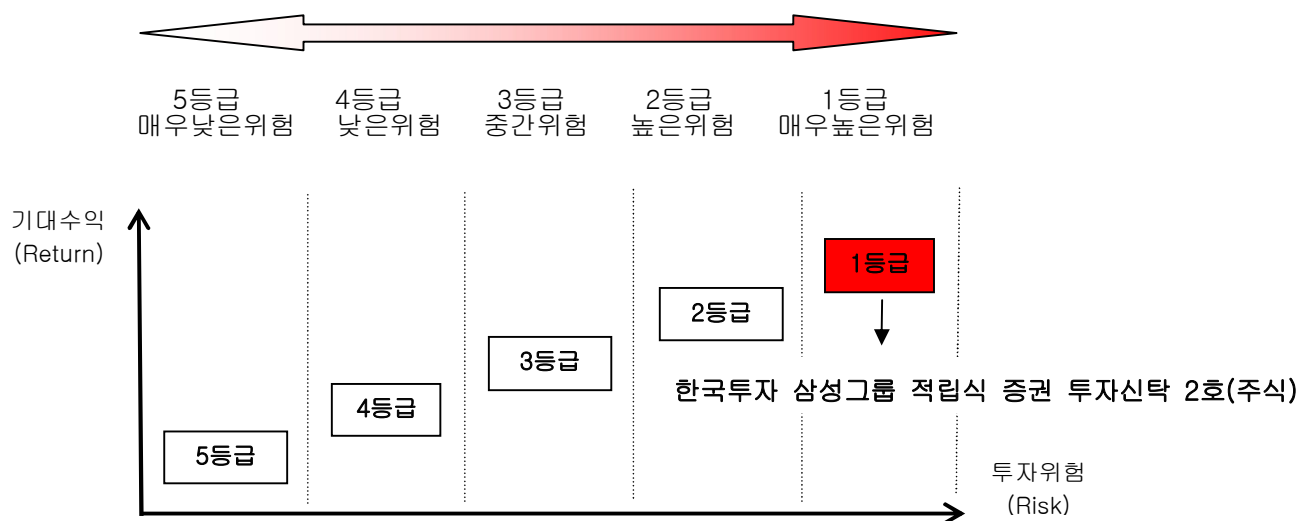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익을 추구하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위험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 초과 6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최대 3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3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②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③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④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6.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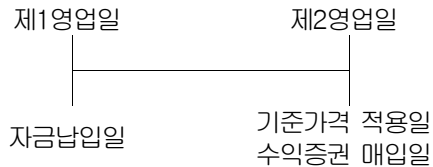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구분	가입자격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종류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없음
종류 C1	제한없음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없음	없음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없음	없음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없음	없음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없음	없음
종류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종류 C-F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없음	없음
종류 C-I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종류 C-W	1)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2)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없음	없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 이 내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5시[오후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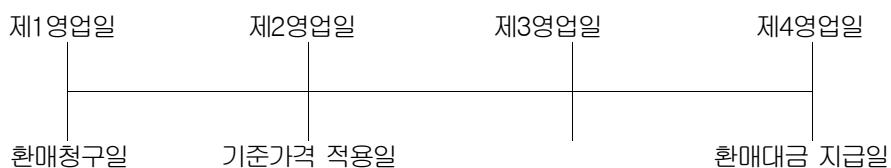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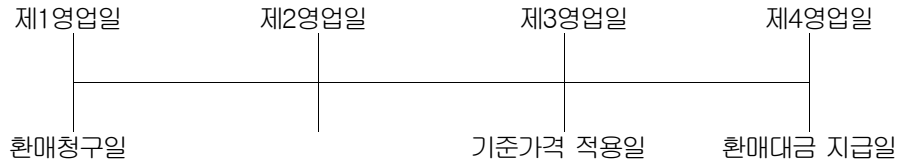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 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을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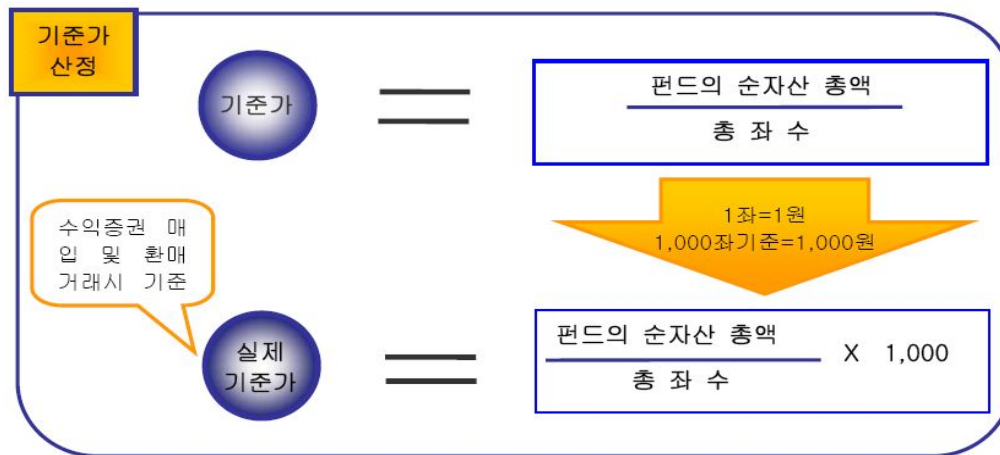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m.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두자산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산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산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상기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00분의 5)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3항 및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 또는 가격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

	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가격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자산	- 취득가격
실물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운용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운용담당부서장, 마케팅담당부서장, 컴플라이언스실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종류 A	종류 C-e	종류C-F	종류C-I	종류C-W	종류 S	종류 S-I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자	집합투자 기구, 기관투자 자 또는 기금	납입금액 50억원이 상인 자	일임형립, 신탁업자, 특별계정 의 신탁업자	집합투자 증권에 한 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 은 회사 (경영금융 투자업자 는 제외한 다)가 개 설한 온라 인 판매시 스템에 회 원으로 가 입한 자	집합투자 증권에 한 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 은 회사 (경영금융 투자업자 는 제외한 다)가 개 설한 온라 인 판매시 스템에 회 원으로 가 입한 자로 서 최초 납입금액 이 50억원 이상인 자	부과 시기
선취 판매수수 료	납입금액 의 1%	-		-	-	-	-	매입 시
후취 판매수수 료	-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0.15% 이내	-	환매 시
환매수수 료	-	-		-	-	-	-	환매 시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 시기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C4	종류C5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 C1 최초매수일로 부터 1년 이상	종류 C1 최초매수일로 부터 2년 이상	종류 C1 최초매수일로 부터 3년 이상	종류 C1 최초매수일로 부터 4년 이상	
선취판매수수료	-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환매시
환매수수료	-	-	-	-	-	환매시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용 (연간, %)							부과 시기
	종류 A	종류C-e	종류C-F	종류C-I	종류C-W	종류 S	종류 S-I	
집합투자업자 보수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700	1.0000	0.0200	1.0000	0.0000	0.3500	0.012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 비용	0.0035	0.0035	0.0030	0.0035	0.0035	0.0011	0.003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335	1.7635	0.7830	1.7635	0.7635	1.1111	0.7755	-
증권 거래비용	0.0910	0.0908	0.0865	0.0910	0.0910	0.0876	0.0910	사유 발생시

구 분	부과비용 (연간, %)					부과시기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C4	종류C5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 C1 최초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종류 C1 최초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종류 C1 최초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종류 C1 최초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집합투자업자 보수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1.3750	1.2500	1.1250	1.000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 비용	0.0034	0.0034	0.0034	0.0035	0.003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2634	2.1384	2.0134	1.8885	1.7635	-
증권 거래비용	0.0943	0.0990	0.0928	0.0951	0.0886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 2014.10.17 ~ 2015.10.16]
-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2014.10.17 ~ 2015.10.16]
-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6	641	1,031	2,119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2	675	1,088	2,201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1	560	963	2,091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251	436	972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1	560	963	2,091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245	426	949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355	615	1,359
종류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	249	432	963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총보수·비용을 산출합니다.
- (주2) [종류 A와 종류 C1]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 S] 수익증권은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기(2014.10.17 - 2015.10.16)	삼정회계법인	적정
제 7기(2013.10.17 - 2014.10.16)	삼정회계법인	적정
제 6기(2012.10.17 - 2013.10.16)	삼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5.10.16)	(2014.10.16)	(2013.10.16)
운용자산	1,176,009,764,284	1,157,029,221,949	1,797,223,695,311
증권	1,173,002,138,652	1,152,551,811,150	1,796,525,896,80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007,625,632	4,477,410,799	697,798,51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938,782,098	6,248,578,349	44,276,295,550
자산총계	1,180,948,546,382	1,163,277,800,298	1,841,499,990,86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362,348,909	10,943,755,926	53,126,177,867
부채총계	9,362,348,909	10,943,755,926	53,126,177,867
원본	1,417,467,341,882	1,445,520,384,226	1,768,069,746,657
수익조정금	-22,480,060,218	17,901,617,143	-11,513,154,073
이익잉여금	-223,401,084,191	-311,087,956,997	31,817,220,410
자본총계	1,171,586,197,473	1,152,334,044,372	1,788,373,812,994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4.10.17 - 2015.10.16)	(2013.10.17 - 2014.10.16)	(2012.10.17 - 2013.10.16)
운용수익	38,698,026,612	-283,560,132,143	67,931,621,852
이자수익	286,149,773	348,075,173	2,276,211,370
배당수익	14,975,806,049	13,928,499,750	20,176,265,201
매매/평가차익(손)	23,436,070,790	-297,836,707,066	45,479,145,281
기타수익	70,974,309	135,950,033	368,043,454
운용비용	20,809,023,890	27,311,889,737	36,026,628,752
관련회사 보수	20,809,023,890	27,311,889,737	36,026,628,75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20,998,373	351,965,705	455,321,021
당기순이익	17,638,978,658	-311,088,037,552	31,817,715,533
매매회전율	41.09	43.42	37.41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8기(2015.10.16)		제7기(2014.10.16)		제6기(2013.10.1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007,625,632		4,477,410,799		697,798,511
1. 현금및현금성자산		3,007,625,632		4,477,410,799		697,798,511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8,285,683,257		929,660,000		44,976,630,000
1. 콜론		8,285,683,257		929,660,000		19,676,63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5,300,0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164,716,455,395		1,151,622,151,150		1,751,549,266,800
1. 자본증권		1,136,206,335,500		1,122,840,825,550		1,728,293,938,20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8,510,119,895		28,781,325,600		23,255,328,600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4,938,737,032		6,248,534,804		44,276,241,36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676,718,258		4,353,680,661		21,688,687,165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922,325		2,217,746		4,862,479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259,096,437		1,892,636,397		22,582,691,725	
6. 기타자산		12		0		0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180,948,501,316		1,163,277,756,753		1,841,499,936,68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7,112,571,495		9,060,319,673		30,641,138,737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77,064,388		1,381,898,197		56,357,84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259,096,437		1,892,636,397		22,582,691,725	
4. 수수료미지급금		4,476,365,636		5,785,741,533		8,002,034,994	
5. 기타미지급금						0	
6. 기타부채		45,034		43,546		54,178	
부 채 총 계			7,112,571,495		9,060,319,673		30,641,138,737
자 본							
1. 원 본		1,417,467,341,882		1,445,520,384,226		1,768,069,746,65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45,881,144,409		-293,186,339,854		20,304,066,337	
(발행좌수 당기: 1,417,467,341,882 좌			이익잉여금 -223,401,084,191		-311,087,956,997		31,817,220,410
전기: 1,445,520,384,226 좌			수익조정금 -22,480,060,218		17,901,617,143		-11,513,154,073
전전기: 1,768,069,746,657 좌)							
(기준가격 당기: 834.25 원							
전기: 812.23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1,171,586,197,473		1,152,334,044,372		1,788,373,812,99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78,698,768,968		1,161,394,364,045		1,819,014,951,731

[단위:원]

다. 손익계산서

과 목	제8기(2014.10.17-2015.10.16)		제7기(2013.10.17-2014.10.16)		제6기(2012.10.17-2013.10.1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5,332,930,131		14,412,524,956		22,820,520,025
1. 이 자 수 익	286,149,773		348,075,173		2,276,211,370	
2. 배당금수익	14,975,806,049		13,928,499,750		20,176,265,201	
3. 수수료수익	70,974,309		135,950,033		368,043,454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15,816,732,074		80,492,653,575		167,102,269,399
1. 지분증권매매차익	113,995,503,426		80,205,853,588		165,824,588,00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2,769		344,063	
7. 기타거래차익	1,821,228,648		286,797,218		1,277,337,333	
3. 매매자산과 평가자산		92,380,661,284		378,329,360,641		121,623,124,118
1. 지분증권매매자산	92,335,887,389		374,833,548,769		121,552,191,727	
2. 채무증권매매/평가자산						
3. 파생상품매매/평가자산						
4. 지분증권평가자산	0		0		0	
5. 외환거래/평가자산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자산	2,778,686		1,764,784		8,022,239	
8. 기타거래손실	41,995,209		3,494,047,088		62,910,152	
운 용 비 용		21,130,022,263		27,663,855,442		36,481,949,773
1. 운용수수료	8,842,167,203		10,411,700,431		13,403,980,258	
2. 판매수수료	11,326,119,424		16,145,716,415		21,651,343,398	
3. 수탁수수료	640,737,263		754,472,891		971,305,096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20,998,373		351,965,705		455,321,02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7,638,978,658		-311,088,037,552		31,817,715,533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2444011		-0.215208337		0.017995736

(주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투자신탁(전체)(종류모)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14,258	11,581	7,946	6,751	8,107	6,959	14,097	11,760
2013.10.17 – 2014.10.16	17,432	17,432	11,295	10,558	14,469	13,575	14,258	11,581
2012.10.17 –	19,347	19,347	18,393	18,435	20,308	20,502	17,432	17,963

2013.10.16								
------------	--	--	--	--	--	--	--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2) 종류 A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5,971	4,764	706	569	1,812	1,513	4,865	3,919
2013.10.17 – 2014.10.16	7,353	7,353	1,445	1,317	2,826	2,622	5,971	4,764
2012.10.17 – 2013.10.16	8,299	8,299	2,893	2,850	3,840	3,844	7,353	7,44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종류 C1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106	84	88	72	152	126	42	33
2013.10.17 – 2014.10.16	512	512	346	321	752	695	106	84
2012.10.17 – 2013.10.16	957	957	1,345	1,335	1,790	1,780	512	51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4) 종류 C-e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723	577	127	103	230	193	620	499

2013.10.17 - 2014.10.16	903	903	206	189	386	361	723	577
2012.10.17 - 2013.10.16	1,128	1,128	402	394	627	627	903	91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5) 종류 C-W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2.10.17 – 2013.10.16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6) 종류 C2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620	493	233	191	739	611	114	91
2013.10.17 – 2014.10.16	1,288	1,288	1,136	1,044	1,804	1,659	620	493
2012.10.17 – 2013.10.16	2,884	2,884	2,095	2,074	3,692	3,705	1,288	1,29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7) 종류 C3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금액	좌수 (출자)	금액	좌수 (출자)	금액	좌수 (출자)	금액

	지분수)		지분수)		지분수)		지분수)	
2014.10.17 - 2015.10.16	1,221	971	869	717	1,524	1,267	566	453
2013.10.17 - 2014.10.16	2,635	2,635	1,733	1,586	3,147	2,905	1,221	971
2012.10.17 - 2013.10.16	4,320	4,320	4,151	4,153	5,836	5,806	2,635	2,66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8) 종류 C4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2,222	1,770	1,274	1,054	2,315	1,910	1,181	949
2013.10.17 – 2014.10.16	3,223	3,223	2,988	2,752	3,989	3,688	2,222	1,770
2012.10.17 – 2013.10.16	1,483	1,483	4,580	4,530	2,840	2,828	3,223	3,25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9) 종류 C5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3,592	2,865	2,236	1,835	1,318	1,107	4,510	3,631
2013.10.17 – 2014.10.16	1,767	1,767	3,042	2,803	1,218	1,130	3,592	2,865
2012.10.17 – 2013.10.16	870	870	1,508	1,489	611	612	1,767	1,78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10) 종류 S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0	0	3	2	1	1	2	1
2013.10.17 – 2014.10.16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11) 종류 C-F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10.17 – 2015.10.16	0	0	2,275	2,200	0	0	2,275	2,13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12.01 ~15.11.30	13.12.01 ~15.11.30	12.12.01 ~15.11.30	10.12.01 ~15.11.30	07.10.17 ~15.11.30

투자신탁(전체)	-6.66	-8.71	-5.53	-2.78	1.43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0.45
종류 S	-7.67				-8.73
비교지수	0.76				0.06
종류 A	-8.25	-10.30	-7.16	-4.44	-0.27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1.40
종류 C-e	-8.27	-10.33	-7.21	-4.54	0.41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1.40
종류 C1	-8.73	-10.78	-7.65	-4.93	-0.80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1.40
종류 C5	-8.27	-10.33	-7.19		-3.05
비교지수	0.76	-0.90	1.21		2.12
종류 C-F	-7.37				-7.25
비교지수	0.76				1.63
종류 C2	-8.62	-10.66	-7.54	-4.83	-3.74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1.26
종류 C3	-8.50	-10.55	-7.42	-4.71	-3.62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0.30
종류 C4	-8.39	-10.44	-7.31	-4.60	-3.51
비교지수	0.76	-0.90	1.21	1.21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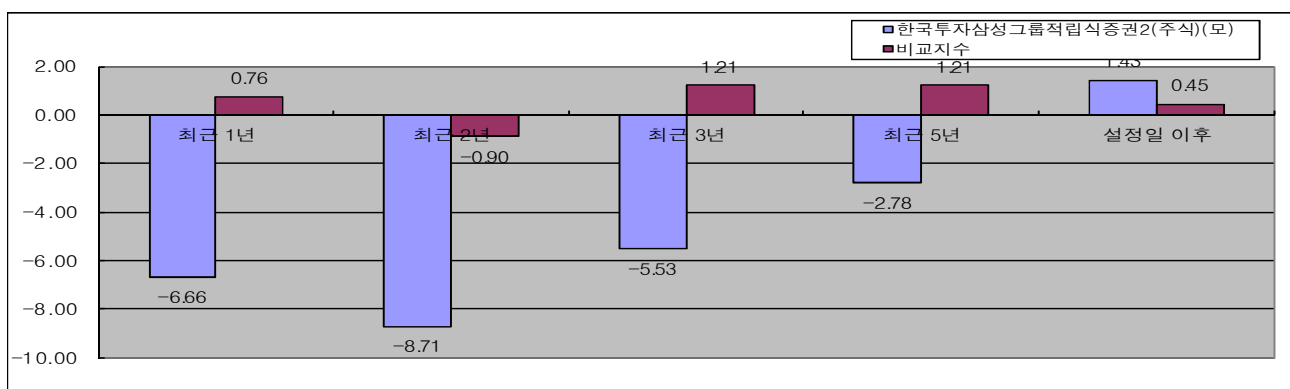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0.9 * [\text{KOSPI}]) + (0.1 * [\text{CD 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율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4.12.01 ~15.11.30	13.12.01 ~14.11.30	12.12.01 ~13.11.30	11.12.01 ~12.11.30	10.12.01 ~11.11.30
투자신탁(전체)	-6.66	-10.72	1.19	12.14	-8.14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종류 S	-7.67	-6.51			
비교지수	0.76	-0.66			
종류 A	-8.25	-12.30	-0.55	10.20	-9.64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종류 C-e	-8.27	-12.33	-0.65	10.00	-9.81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종류 C1	-8.73	-12.77	-1.08	9.62	-10.03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종류 C5	-8.27	-12.33	-0.58	10.16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종류 C-F	-7.37				
비교지수	0.76				
종류 C2	-8.62	-12.67	-0.96	9.75	-10.00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종류 C3	-8.50	-12.56	-0.83	9.89	-9.90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종류 C4	-8.39	-12.44	-0.71	10.03	-9.82
비교지수	0.76	-2.54	5.56	4.63	-2.09

(주1) 비교지수: $(0.9 * [\text{KOSPI}]) + (0.1 * [\text{CD 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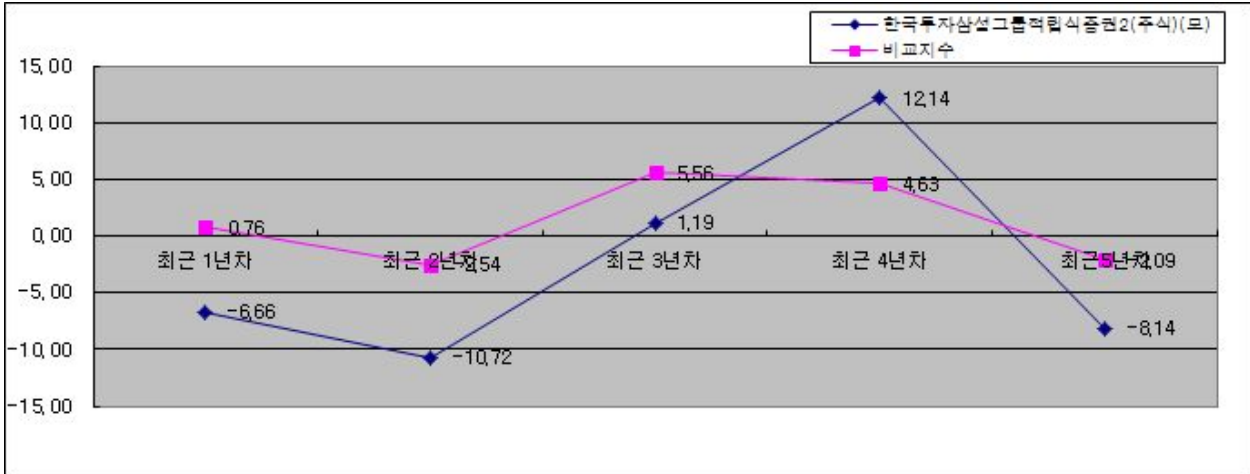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5.10.16 현재 /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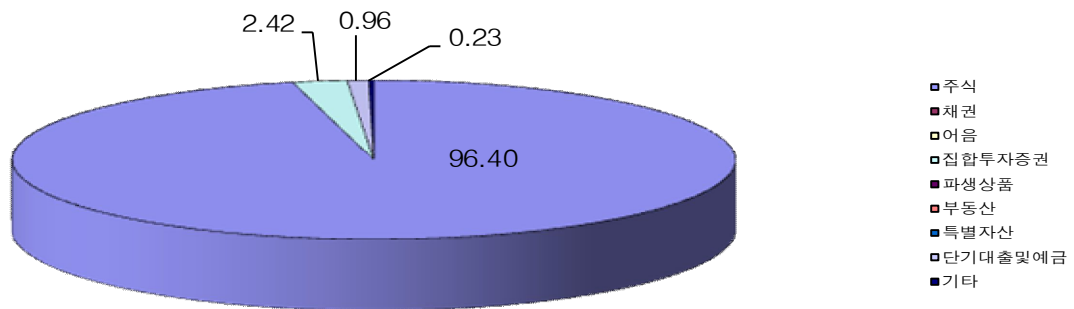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1,362	0	0	285	0	0	0	0	0	113	27	11,787
	(96.40)	(0.00)	(0.00)	(2.42)	(0.00)	(0.00)	(0.00)	(0.00)	(0.00)	(0.96)	(0.23)	(100.00)
합계	11,362	0	0	285	0	0	0	0	0	113	27	11,787
	(96.40)	(0.00)	(0.00)	(2.42)	(0.00)	(0.00)	(0.00)	(0.00)	(0.00)	(0.96)	(0.23)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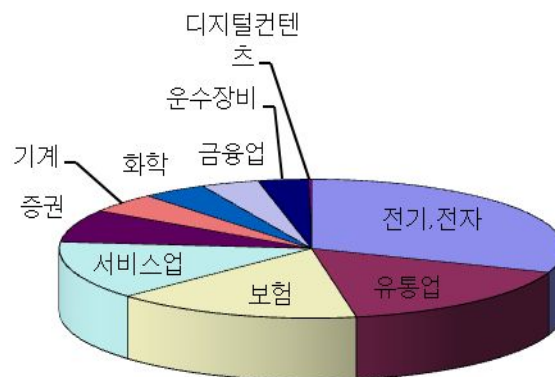


(1) 국내주식 업종별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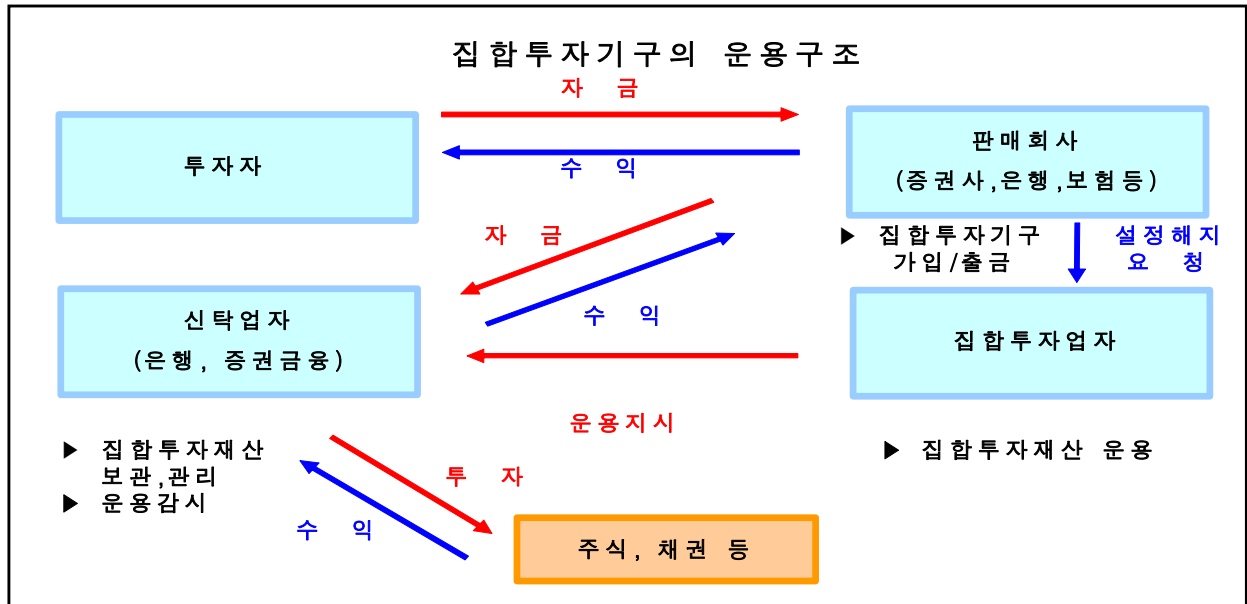
[2015.10.16 현재 / 단위:억원,%]

NO	업종별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3,478	30.61
2	유통업	1,880	16.55
3	보험	1,794	15.79
4	서비스업	1,538	13.54
5	증권	871	7.66
6	기계	520	4.58
7	화학	471	4.15
8	금융업	422	3.71
9	운수장비	368	3.24
10	디지털컨텐츠	20	0.17
합계		11,362	100.00

(주1) 보유비율 = (평가액 / 총평가액) * 1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m.co.kr)
회 사 연 혁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주)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30 : 한국투자증권 편입
자 본 금	660억
주 요 주 주 현 황	한국투자증권(100%)
이 해 관 계 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15기 (2014.12.31.)	제14기 (2013.12.31.)	계정과목	제15기 (2014.1.1.~ 2014.12.31.)	제14기 (2013.4.1.~ 2013.12.31.)
현금및예치금	125,396	73,891	영업수익	83,463	66,922
매도가능금융자산	2,414	2,432	영업비용	51,092	37,369
종속기업투자주식	0	24,673	영업이익	32,371	29,553
대출채권및수취채권	847	830	영업외수익	450	38
유형자산	781	783	영업외비용	2,020	171
기타자산	18,558	17,849	법인세차감전	30,801	29,420
자산총계	147,996	120,458	법인세비용	5,722	132
퇴직급여부채	948	844	당기순이익	25,079	29,288
기타부채	32,631	4,289			
부채총계	33,579	5,133			
자본금	66,000	66,000			

자본잉여금	788	78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41	692
이익잉여금	46,788	47,845
자본총계	114,417	115,325

라. 운용자산 규모

[2015.11.30 현재 / 단위:억]

집합 투자 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 산파생	특별자 산및특 별자산 파생	혼합자 산및혼 합자산 파생	단기 금융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 계약 형	재간접형	파생 형					
수탁고	81,056	49,301	14,012	0	58,407	24,438	9,801	23,011	0	21,332	281,35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연락처 : 02-2002-3000,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9층 (연락처 : 02-6300-7200,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399-335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나.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다.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마.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www.kim.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한국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294,349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의 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의 내역입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집합투자재산의 이익도모의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투자중개업자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집합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채권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원]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	-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